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05.1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안은 2021.4.26.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4.3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의안번호 : 2589호).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고,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 관리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검토 내용

- 제정안은 본칙 6조항, 부칙 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칙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교육계획을, 안 제3조는 교육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은 1개 조문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의견

-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대통령

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토록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입니다.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제정이라 보고 드립니다.

※ 참고로 상위법 개정 이후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서구와 성동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 강진군을 포함 총 61개 자치정부가 제정·시행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

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